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-0101호

#### < 2025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'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'과 ② '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', '기술마켓 혁신제품'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『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』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## 제도 개요

- □ 목 적
- ① 과기정통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② 과기 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·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
- □ 주요내용

#### [Track 1]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
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\*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으로 지정

\*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 또는 보통 이상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
#### [Track 2]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

- o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\*로 선정된 제품 중,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"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"으로 지정
  - \*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
- o (기술마켓 혁신제품)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\*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"기술마켓 혁신제품"으로 지정
  - \* 중소기업기술마켓(이하 "기술마켓") 플랫폼(techmarket.kr)에 등록된 제품
-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"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", "디지털 서비스 혁신제품", "기술마켓 혁신제품"은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

#### 추진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5호 사목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5호 "혁신제품 지정 지침"

#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
주관: (사)한국산업기술진흉협회(KOITA)

- □ 신청대상・제품
  - o 아래 **두 가지 자격요건을**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  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    -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20.1.1.~'25.3.10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\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    - \*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 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
    - 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#### □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'25. 2. 3.(월) ~ '25. 3. 10.(월) 18:00까지
- (신청방법)
  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<u>제품등록\*</u>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
    - \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  - ※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, 「중소 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

| 접수처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터넷 신청 주소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<br>시상운영팀 | 02-3460-9192<br>02-3460-9020 | www.skip.or.kr |

#### □ 신청서류

○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인터넷 홈페이지(www.skip.or.kr)를 통해 자료 업로드

| 번호  | 제출서류  | 구분  | 서식  |
|-----|---|-----|-----|
| 1   |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| 필수  | 첨부1 |
| 2   |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/보통이상) 확인 증빙자료<br>(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<br>증빙자료)      | 필수  |     |
| 3   |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| 필수  |     |
| 4   | 제품 규격서(자기점검표,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)   | 필수  | 첨부2 |
| (5) | 신청제품 설명서  | 필수  | 첨부3 |
| 6   |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<br>(인증·허가의 획득, 신고, 검사의 통과, 관련 서류의 제출 등)<br>이행 증빙자료 | 필요시 | 첨부4 |
| 7   | 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<br>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              | 필요시 |     |

#### □ 제도 추진절차

#### 구 분 주 체 세부내용 ■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제품등록 신청기업 ※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제13조.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신청기업 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품 ■ 신청서류 검토 평가기관 평가·심사 ■ 혁신성 평가(1차 서류심사, 2차 현장심사, 3차 종합심사) 심의예정 과기 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공고 정통부 조달정책 기회 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·의결 심의위 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(과기정통부 → 조달청) 재정부

□ 평가절차

심의·의결

|               | <b>①서류검토</b><br>평가기관          | $\Rightarrow iggl[$ | ② <b>1차심사(서류·면접)</b><br>전문분과위 | $\frac{1}{3}$ | ③ <b>2차심사(현장확인)</b><br>현장심사단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$\Rightarrow$ | <b>④조달적합성 검토</b><br>조달청(혁신센터) | $\Rightarrow$       | ③ <b>3차심사(종합심사)</b><br>종합심사위  | $\Rightarrow$ | 6         혁신제품 지정 심의           조달정책심의위 |

- ① (**서류검토**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1차심사(서류·면접심사))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(대면설명 및 질의)을 통해 신청제품 심사
  - \* 1차심사 일정.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
- ③ (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)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,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  - ※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
- ④ (조달적합성 검토) 평가기관은 주무부처(조달청)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
- ⑤ (3차심사(종합심사)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,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
- ⑥ 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소관부처 : 기재부)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・의결

#### □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

-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' 제11조에 따라, 1차심사(서류·면접 심사)의 평가점수\*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
  - \* (평가점수산정)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- 2차심사(현장확인심사)에서의 3차심사(종합심사) 상정 여부,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 여부는 **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**

〈참고1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 항목  |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~ ~ ~  | 공공현안<br>부합성(10)  | ■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*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<br>*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,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시대·<br>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, 기후·환경문제 개선 등 |  |
| 성<br>평<br>가  | 공공구매<br>필요성(10)  | ■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<br>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 |  |
| 가<br>(30)  | 현안의<br>시급성(10)   | ■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,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혁 기술·제품<br>신규성(15) ■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,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<br>성 기술·제품 ■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해시기수이 얼마나를 점요되었는 |                  |   |  |
| 성<br>평<br>가  | 기술·제품<br>탁월성(15) | ■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,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<sup>*</sup> 여부<br>*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,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                  |  |
| 가<br>(40)  | 기술·제품<br>신뢰성(10) | 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|  |
| 사업   | 사업모델<br>적합성(10)  | ■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,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<br>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 |  |
| 접하여라   | 시장창출<br>가능성(10)  | ■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·확장할 수<br>있는지 여부   |  |
| 평<br>가<br>(30)   | 파급효과<br>(10)     | ■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, 민간으로<br>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<br>및 규모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## □ 문의

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-<br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| 044-202-4742 | <br>제도 문의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044-202-4735 | 에도 군의<br>         |  |
| 친구사어기스지층청히 지사으여티         | 02-3460-9192 |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     |  |
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        | 02-3460-9020 | 세구 포칭걸시 걸경 포의<br> |  |

###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

주관:한국지능정보사회진 8원(NIA)

#### □ 신청대상·제품

- ㅇ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
  -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**디지털서비스**로 **선정**된 제품 중 **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**에 등록된 제품
  - ②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- (기술마켓 혁신제품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- ①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
  - ②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
    - ※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  - 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  - ④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보유
    -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※ 특허증. 특허원부만 인정되며, **특허출원은 인정 불가**
    -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(**전용실시권자를 포함**)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
    - 공동자(또는 복수의 권리자)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『해당 시 제출서류』중 지적 재산권 권리에 대한 '약정서'를 제출할 것
      - \* 법인의 경우 법인명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(이전)되어야 함(출원 인정불가)
  - ⑤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
#### □ 신청대상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'25. 2. 3.(월) ~ '25. 3. 10.(월) 18:00 까지
- (신청방법)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제출 ※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

| 구분             | 접수처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신청 주소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디지털서비스<br>혁신제품 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<br>Al-클라우드기술혁신팀 | 053-230-1795 | hw_kim@nia.or.kr |
| 기술마켓<br>혁신제품   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<br>Al-클라우드기술혁신팀 | 053-230-1794 | yun@nia.or.kr    |

#### □ 신청서류

-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: 전자우편(hw\_kim@nia.or.kr)으로 제출

| 번호  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서식  | 비고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1       |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          | 필수 | 첨부5 |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|
| 2       | 신청제품 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첨부6 |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|
| 3       |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| 필수 |     |                |
| 4       |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 <u></u> | 조달청 카탈로그계약 시 제출한<br>"카탈로그" 서류 | 필수 |     |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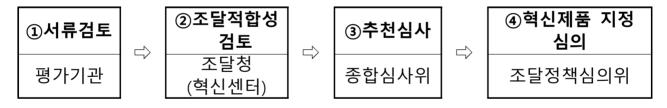
- 기술마켓 혁신제품 : 전자우편(yun@nia.or.kr)으로 제출

| 번호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| 서식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|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| 첨부7 |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                |
| 2   | 신청제품 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| 첨부6 |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                 |
| 3   |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 |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5) |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 |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<br>- 자기점검표, 검토의견서, 제품규격서 | 필수 | 첨부8 | 별지1-1. 증빙자료,<br>[참고] 가이드 및 샘플 참고 |

□ 제도 추진절차 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

구 분 주 체 세부내용 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 신청 신청기업 으로 제출 ■ 신청서류 검토 제품 평가기관 평가·심사 ■ 추천심사 심의예정공고 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과기정통부 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 기획재정부 ■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통보 심의·의결 ※ 기획재정부 → 과기정통부, 조달청 → 신청기업

□ 평가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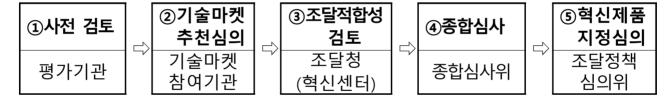


- 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,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조달적합성 검토) 평가기관은 주무부처(조달청)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
- ③ (추천심사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 여부 심사
  - ※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
- ④ 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소관부처 : 기재부)를 통해 혁신 제품 지정 최종 심의 · 의결

□ 제도 추진절차 (기술마켓 혁신제품)

주 체 구 분 세부내용 ■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 신청 신청기업 우편으로 제출 ■ 신청서 및 제출 서류, 자격 등 사전 검토 제품 평가기관 평가·심사 ■ 평가(기술마켓 추천심의, 종합심사) 심의예정 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과기정통부 공고 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·의결 조달정책심의위 기획재정부 ■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통보 심의·의결 ※ 기획재정부 → 과기정통부, 조달청 → 신청기업

#### □ 평가절차



- ① (**사전검토**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, 진위 여부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추천심의) 기술마켓 참여기관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제품 추천 여부 확정 심의
- ③ (조달적합성 검토) 평가기관은 주무부처(조달청)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
- ④ (**종합심사**)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, 추천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성, 공공성 등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
- ⑤ 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(소관부처 : 기재부)를 통해 혁신 제품 지정 최종 심의 · 의결

#### □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

- 제품 평가·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\*으로 결정
  - \* 아래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찬성으로 간주함

#### 〈참고2〉디지털서비스, 기술마켓 혁신제품 추천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 항목  |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용 양 이  | 공공서비스<br>혁신<br>(15점)  | ■ 국민생활편의 향상, 국민 생명, 안전·보호, 공공기관 업무혁신 등<br>공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가?<br>-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<br>- 구매기관의 업무혁신, 안전예방,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                   |
| 문<br>제<br>해  | 문제해결의<br>창의성<br>(10점) | ■ 해당 제품이 적용된 기술·아이디어는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공공<br>문제에 차별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가?   |
| 결<br>(35)  | 제안대상의<br>적정성<br>(10점) | ■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및 유지·관리 등의 비용이 제공될<br>가치(결과)를 고려할 때 적정한 대상인가?<br>- 현행 문제해결에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 |
| 사회   | 국민체감<br>효과<br>(15점)   | • 해당 제품이 공공에 적용되어 다수의 국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? - 해외수출, 판로확대,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?   |
| 적<br>편   | 사회적<br>비용예방<br>(10점)  | ■ 해당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사회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·절감<br>할 수 있는가?<br>- 안전·위생·보건·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가?  |
| 익<br>(35)  | 지속성장<br>발전<br>(10점)   | ■ 해당 제품의 도입으로 신산업, 친환경, 안전망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<br>가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?   |
| 혁<br>신<br>구  | 신기술<br>수용성<br>(10점)   | ■ 적용 기술 등이 이종 산업 또는 관련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<br>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가?<br>- 외산제품 대체,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가?<br>-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, 시급히 도입·활용이 필요한가? |
| 매<br>필<br>요  | 혁신수요<br>창출<br>(10점)   | ■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해외, 민간 수요 등<br>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가?<br>- 공공·민간시장 확대,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?   |
| 성<br>(30)  | 정책적<br>부합성<br>(10점)   | 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존재하는가?<br>- 디지털·그린뉴딜, 4차 산업혁명, 수출규제 대응, 탄소중립 등 정부의<br>정책지원 영역과의 관련성   |
| 현안의 시급성<br>(가점) -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<br>(감염병, 지진·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? |                       | ■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<br>(감염병, 지진·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?)   |

## □ 문의

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<br>인터넷진흥과         | 044-202-6286<br>044-202-6362 | 제도 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<br>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 | 053-230-1795                 | 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<br>(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) |
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<br>AI-클라우드기술혁신팀 | 053-230-1794                 | 세부 운영절차·일정 문의<br>(기술마켓 혁신제품)   |